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2866

제출일자 : 2026. 8. 21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의 3의 개정(본조신설 2026. 3. 17., 시행일 2026. 9. 18.)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조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 거리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27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6. 7. 20. ~ 8. 10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7조3(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.

1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
2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1.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
2.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(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)
3.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)

[본조신설 2026. 3. 17.]

[시행일: 2026. 9. 18.] 제27조의3